

I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내용	○ 대상 축산농가·법인 등에게 지원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 선납입금 상환 자금(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 융자 지원	
사업기간	○ '13년 ~ 계속	
수행주체	○ 사업시행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수혜자 : 축산농가	
자원근거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강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증식, 토종가축의 보존·육성, 축산 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 개선·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추진경위	년도	내용
	'08년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한시사업)
	'13년	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시
	'13년	국제곡물 폭등 및 축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 1.3조원 별도 편성 지원(한시사업)
	'20년	집중호우 및 코로나19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기금운영계획 변경 (18,901백만원)
	'22년	한시적 금리인하(△0.8%p) 및 상환기간 연장(2년거치 일시상환 → 3년거치 2년분할상환)
	'25년	한육우 농가 대상 '25년 상환 도래 사료구매자금 1년간 상환유예 ('25년 61억원, 융자규모 6,387억원)
기대효과	○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① 축산업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가격 변동 대응, 생산비 절감 및 수급 안정화를 도모하여 ② 국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 기여	

2 사업 추진 절차

① 농가사료 구매자금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시행지침하달 ↓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연도 사업지침 및 시도별 한도 배정
② 신청접수 ↓	시도, 한우조합연합회	- 사업홍보 및 사업신청서 접수
③ 사업자선정 ↓	시도, 한우조합연합회	-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자선정
④ 자금대여 ↓	기금사무국	- 지역농·축협에 지원 필요금액 대여
⑤ 자금대출 ↓	지역농축협(대출취급기관)	- 선정된 사업자 심사 후 대출
⑥ 사업완료 보고	시도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완료 후 결과 보고

II

2026년도 사업시행 주요 내용



1. 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자금을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자)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정책자금 대출 상환 용도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

-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하며,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일부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도 예외로 지원 가능

*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

○ (최종 수혜자) 축산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지원대상 제외

① 제외 대상

-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교육공무원, 정부(지방)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비정규 계약직* 또는 근로계약 상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는 지원 가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

* 계열화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표이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사료 공급업체의 사료 구매 시 지원 불가

- '25년부터 '26년 추천일 현재까지 KAHIS 확인 결과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농가(단, '25년 발생농가가 당해연도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경우에는 금번 지원 대상에 포함)

* 다만,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준수하여 관할 시·군이 승인한 농가는 예외로 함

- '22.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자연인 또는 법인)

① 대상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물보호법」, 「사료관리법」, 「약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② 지원제한 대상기간 : 형의 확정 또는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반에 따른 처분 내용에 따라 다음의 기간으로 함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 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 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보류하며,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 과태료(1회) 처분 시에 대해서만 경감률에 따라 1년 이내에서 지원 제한대상기간 단축 가능(예시 : 30% 경감 시 지원제한 대상기간 : 12개월 × 70/100 = 8.4개월,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8개월간 지원제한)

○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

*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염소(산양에 준함), 거위·칠면조·기러기(오리에 준함)

3. 사업시행기관

○ 시행주체 : 시·도(시·군·구 포함),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한우협동조합연합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 구매하는 OEM사료구매 정책자금지원의 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연합회로 하며, 이 경우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를 외상구매했거나 신규로 계약 체결한 농가의 당해 사료구매 지원(한우에 한함)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에 지원을 신청한 자는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다만, 한우 이외의 축종은 시·도에 중복하여 신청 가능(중복 신청 금지 위반 적발시 선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대출취급기관 :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품목조합 포함) 및 농협은행

① 대출금 신청

- 사업대상자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
- 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취급기관 소재 시·군·구는 일치하여야 함
- * 선정·추천받은 시·군·구에 소재한 조합 및 농협은행에서만 대출 가능
- **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OEM사료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업신청시 선택한 시·군에서만 대출 가능
- 단, 해당 시·군·구 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 시행주체간 승인하에 타 지역 대출 가능
- * 타 지역 대출을 승인하는 경우 승인 내역을 별도로 관리
- ** 타 지역 대출을 취급한 조합 및 농협은행은 해당 사업 시행 주체에 대출 내역 통보

② 대출금 처리

- 대출금은 자금의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해 지역 농·축협 및 농협은행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입금
- 단, 분할 대출 신청 시 대출은 당해 연도 내 이루어져야 하며, 3·6·9·12월을 기준으로 분할 가능
(예시 : 4월에 최초 대출을 받은 경우 분할은 6·9·12월에 가능)
- * 대출금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사료구매자금 목적대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반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 제한 및 자금 환수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분할 대출은 사료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입금일 및 금액(최소 100만원 단위)을 기준으로 함(실제 대출가능한 금액이 계약 금액의 총합보다 적은 경우 사업 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이 협의하여 분할 금액 조정)
- *** 분할 대출 신청 시 상환기간은 최초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2년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사료 구매 및 기존 외상 금액 상환

* 사료 범위 : 거래 내역 증빙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료공급업체에서 공급한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위·배합·보조사료(TMR, 조사료 포함)

- 설탕(식용으로 제조한 설탕 포함) : 꿀벌의 무밀기에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

5.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비고
농가사료구매자금	-	-	100	-	

* 금리 1.8%, 2년 거치 일시 상환

※ 지원조건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당시의 시행 지침 내용에 따름

- *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경우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식품부 예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농가단위 피해를 수준에 따라 상환 연기·이자 감면 차등 지원 가능(관련 : 농어업재해대책법,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고시)
- 농가단위 피해를 30% 이상 50% 미만 : 상환연기·이자감면 1년
- 농가단위 피해를 50% 이상 : 상환연기·이자감면 2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배분기준

○ 축종별 “농가당 지원한도”와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 ① “농가당지원한도”와 축종별 “마리당지원단가”는 [별표1] 참조
- ② 복수의 축종을 사육 중인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선택하고 “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 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곱한 금액”은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릿수와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한 값을 합산해 산정
- ③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의 사육 마릿수는 수매 및 살처분 당시의 사육 마릿수로 함

○ 사업 신청 시 이전 사료구매자금 지원 금액(대출잔액 기준)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 한도에서 차감한 금액 내에서 중복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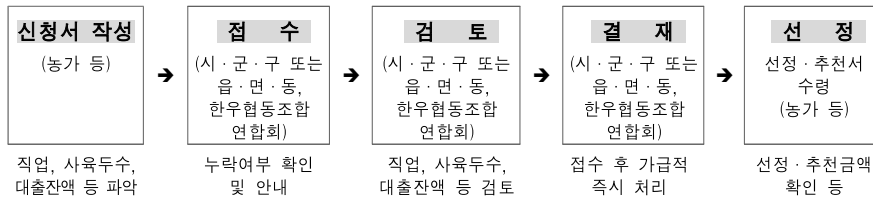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과 축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 모돈이력제 및 암소비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경우 농가당 지원 한도를 최대 9억원

까지 확대하여 지원 가능

- *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는 지자체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의 확인서를 확인하고, 암소 비육지원 사업 참여 농가는 신청인이 농협경제지구 축산경제대표 또는 전국한우협회장의 확인서 첨부
- 허위로 신청하거나, 사후 모돈이력제 참여를 철회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기 지원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7.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 절차

< 자금 신청 및 선정·추천 절차 >



○ 대여금 배정

- 연간 2회 분산 배정(필요시 추가 배정 가능)
- * 사업자 미선정 및 미대출·취소 등 잔액이 있는 경우 반납조치 후 추가 배정 실시
- ** 사업신청자는 사료 이용량, 대출규모 등을 감안하여 분산 신청 요망

○ 사업 대상자 선정

- 사업 시행주체는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 * 시·도 담당자는 시·군·구에 자금 배정 시 특별재난지역 여부를 고려하여 차등 배정 가능

○ 선정 순위

※ 다음 각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 ① (1순위) '23~'25년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강원·경기북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제한 피해농가
 - *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 대상자에 한하며, ① 미지원자 ② 부분 지원자 ③ 전액 지원자 순으로 선정
- ② (2순위)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③ (3순위)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①미지원자, ②부분 지원자, ③전액 지원자 순)

- * 전업농 기준(축산업 허가제 면적에 따른 사육두수 반영) : 소 100두 미만, 돼지 2,000두 미만, 양계 50,000수 미만, 오리 10,000수 미만

④ (4순위)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

- * 동물복지형 축산(「동물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인증 농가) 전환 농가, 단, 산란계 농가는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개정)」 부칙 제4조에도 불구하고 동 시행령[별표 1]의 사육시설면적(0.075㎡/마리)을 준수하여야 우선순위 인정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 농가 및 무항생제축산물인증 농가
-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 저메탄사료 또는 질소저감사료를 사용한 농가, 약취저감제 등을 사용하여 축산악취를 저감한 농가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

⑤ (5순위) 청년창업농

- *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사업 대상자

⑥ (6순위) 경매 출하 우수 농가(양돈 사육두수 30% 이상)

⑦ (7순위) 전업농 기준 초과 농가(①미지원자, ②부분 지원자, ③전액 지원자 순)

○ 선정 취소 및 반납

- 시·도 배정 후 3개월 내 대출 실행을 하지 않은 사업대상자는 선정 취소 및 반납 등 조치(반납액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취합 후 재배정)
- * 포기 및 미 대출액은 선정·추천 기한 내 다른 농가(차순위)에게 재선정·추천 가능하며, 선정·추천되지 않은 금액 및 미 대출액 등은 반납 조치

○ 상속 및 증여·매매에 따른 승계

- 사업대상자의 사망에 따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축사를 상속 받아 축산업을 지속하는 경우 사료구매자금 승계 가능
- 사업대상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축사를 증여 또는 매매 하여 피증여자 또는 매수자가 축산업을 지속하는 경우 사료구매자금 승계 가능

III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

① 사업신청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연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시·도 및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시달
- 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추진내용, 시행기관별 사료구매 정책자금 배정액과 추천 방침을 포함하여 시달

2. 사업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시행기관인 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조치(2~3월, 6~7월)
- * 신청접수 결과 배정금액에서 추천 잔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접수 가능

3. 사업신청자

- 신청자는 별지 1호의 사업신청서(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포함)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2~3월, 6~7월)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 사본 1부, 대출관련 서류 1부,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② 사업자 선정단계

1. 사업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우선순위, 축종, 사육두수, 지원액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는 주관기관에서 보관)(2~3월, 6~7월)
- 시행기관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 자료를 토대로 대출취급기관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담보범위 등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별지 제5호 서식(신용조사서)으로 회신

** 선정된 사업자의 대출실행 일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선정 완료

***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농식품부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이 완료되어야 함을 반드시 안내 조치

- 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선정된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③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1. 신청자

-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을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행기관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 선정된 사업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지정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대출 실행
- *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이행상황(대출 실적, 사료구매실적 등)을 시행기관에 보고
- ** 분할입금을 신청한 경우 2회차부터 대출 실행일 이전에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사료구매자금대출 지급신청서'(대출취급기관 비치)를 작성

2. 사업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시행기관은 사업자의 이행상황 보고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다음 연도 3월 마지막날까지)
- 사업자 선정 결과의 사후변경 등 사업추진 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 시행기관은 사업자의 대출 이행상황 확인 결과 기한내 대출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배정잔여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조치

④ 자금배정단계

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시행기관별 자금배정을 실시
 - * 자금배정 내역은 시행기관 및 위탁관리기관(축산발전기금사무국), 농협은행에 통지

2. 위탁관리기관(축산발전기금사무국)

- 자금배정 내역을 통보받은 위탁관리기관은 대출취급기관에 필요한 자금 대어

3. 대출취급기관(조합 및 농협은행)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의 지원한도 초과 여부(기 대출분 고려),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 * 대출금의 입금은 사료구매 계약서, 사료구매자금대출 지급신청서 등을 확인한 후 사료 공급업체에 입금
- 농림축산식품부 및 선정기관(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금대출 결과 회신

4. 사업 선정자

-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등을 확인한 후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

⑤ 이행점검 단계(사후관리 단계 포함)

1. 사업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시행기관은 사업자에 지원에 따른 생산비 절감 효과(농가의 경영 및 축산물 가격 안정)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실시
- 사업신청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이행하였는지 등 확인
- 사료구매 계약서 및 관련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비치·관리(2년간 보관)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자격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 제7항의 기간동안 지원제한)
- 사업자가 사업 시행 후 추진일정*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연 사유와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을 제출받아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 농가사료구매자금의 경우 선정일로부터 3개월 내 자금 집행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 일정을 경과한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가 지원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대출금 회수 등 조치
 - 지원 제한, 대출금 회수 등 조치 현황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다음 연도 3월 마지막날까지)
- 사업 시행 후 자금배정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추진일정에 따라 차입하지 않은 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차입 후 중도상환 제외)

⑥ 성과 측정 단계

1. 사업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자별로 제출한 이행결과를 토대로 이행성과 확인
 - 평가기관 : 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평가내용 : 사업 선정 결과에 따른 이행실적을 제출받고, 이를 사업자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실적 확인
- 확인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⑦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1. 사업평가

- 성과측정단계에서의 사업시행기관별 확인 결과로 대체

2. 사업성과에 따른 환류

- 사업성과 확인 결과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우대
-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차기 사업자 선정시 배제 또는 사업비 지원액의 감액 등 조치

[8] 정산결과 보고

1. 사업 시행기관[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 사업 시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대상	보고 기한	서 식
○ 지원사업 연간(최종)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지원 금액 이행 내역 등 - 사업 추진 지연 시 그 사유	시·도, 한우협동조합연합회	익년도 1월말까지 익년도 1월말까지	[별지 8호]

- 사업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대출실행내역, 농가사료 구매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업 주관기관에게 제출
-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 종료 후 사업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추진 결과를 정리 및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익년도 1월말까지)
 - 보고 후 변동사항 발생 시 그 사유와 함께 수정보고

IV

각종 양식



[별표 1]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등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당 지원한도	마리당 지원단가	전제 조건	비고 (금리 및 지원조건)	
한육우	일반	600,000	2,600	해당없음	1.8%, 2년 일시상환	
	암소비육지원	900,000	3,290		"	
낙농	일반	600,000	3,500		"	
				"		
양돈	일반	600,000	300	해당없음	"	
	구제역, ASF, 모돈이력제	900,000	390		"	
산란계	일반	600,000	13	해당없음	"	
	AI	900,000	17		"	
육계	일반	600,000	5		"	
	AI	900,000	7		"	
토종닭	일반	600,000	9			
	AI	900,000	10			
오리 (거위, 칠면조, 기러기)	일반	600,000	9		"	
	AI	900,000	11		"	
사슴	일반	90,000	900		해당없음	"
말	일반	90,000	1,050			"
산양 (면양, 염소)	일반	90,000	180	"		
토끼	일반	90,000	12	"		
메추리	일반	90,000	6	"		
꿩	일반	90,000	12	"		
타조	일반	90,000	300	"		
꿀벌	일반	90,000	군당 150	사료용도인 설탕의 구매자금은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함		

* 구제역, ASF 및 AI : '23 ~ '26년 피해 농가[경계지역 내의 사육농가 및 역학 관련 농가 등(살처분 농가 포함)]
강원-경기북부 등 ASF 이동제한 피해농가, 모든 이력제 및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 농가(농가당 9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제 연중 사용 농가(소, 돼지, 닭, 오리)는 농가당 지원한도의 1.5배까지 지원 가능
(미생물제제 권장 사용량의 월 평균 사용규모에 맞는 구매 내역 등 연중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 각 시·도(시·군·구)별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단가는 축소운영 가능

*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자 한도 계산 예시

① 1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266,900천원 = (90마리 × 2,600천원) + (10마리 × 3,290천원)

② 500마리 사육 농가에서 10마리 암소를 비육지원사업 참여 : 632,900천원 = 600,000천원(일반 지원 한도) + (10마리 × 3,290천원)

[별지 제1호 서식]

사 업 신 청 서

신청자	①성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직업	⑥직장명	⑦연락처
		[직업 및 직장명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제가 있습니다.]	
신청내용	⑧농장명	⑨연락처	
	⑩소재지 (도로명 주소 기재)		
	⑪축종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골뱅이 []거위 []칠면조 []가리기 []면양 []염소	
	⑫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⑬사육면적	
	[사육두수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제제가 있습니다.]		등 m ²
	⑭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⑮신청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축협 / 농협은행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마릿당 지원단가를 계산해서 신청하세요]	
⑯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 기존 외상금액 상환 ()		
⑰기타	구제역·ASF·AI 피해농가() / 강원·경기북부 등 ASF 이동제한 피해 농가() / 모든이력제 참여농가() /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농가()		
⑱입금선택	일시 입금 () / 분할 입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 농가사료저거래상환지원 / 사료구매자금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⑲증빙서류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1부. 3. 대출관련 서류(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1부 4.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1부.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㉔사업신청과 관련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세무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료업체, 대출기관 등에 본인의 직업정보 및 구매내역, 대출현황 등을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㉕본인은 공무원, 교육공무원,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이 아님을 확인합니다(단, 계약직 등 비정규직, 1일 4시간 이하 근로자는 제외). ☐			
㉖사육두수가 신청일 현재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㉗본인은 국가동물질병관리시스템(KAHIS) 질병발생 정보조회에 동의하며, '23년부터 신청일까지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미발생 농가임을 확인합니다. ☐			
㉘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㉙'22.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또는 벌금·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았으나 지원제도의 해당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			
㉚농림축산식품부 자금 배정 후 3개월 이내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㉛사료구매자금은 사료공급업체로 입금되며, 대출취급자 또는 사료공급업체에서 사료구매자금을 농가로 입금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리 부과, 지원제한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㉜사료공급업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업체가 아니며, 해당 사실 위반이 의심되어 지자체·대출취급업체 등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㉔ ~ ㉜ 사항 및 시행지침에 대하여 동의하며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 · 군수 · 자치구청장			
() 하우조합장			

<작성 요령>

- ▶ ①성 명 : 농가는 개인의 성명, 법인은 법인의 정식 명칭을 적으세요.
- ▶ ②생년월일 : 농가는 생년월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세요.
- ▶ ③연 락 처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 ④주 소 : 신청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 ⑤직 업 : 신청자의 직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에 다니지 않을 경우 “축산업”이라고 적으세요.
- ▶ ⑥직 장 명 : 본인의 현재 직장명을 적으세요.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명”을 적으세요.
- ▶ ⑦연 락 처 : 직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시거나 별도의 직장이 없는 경우 농장의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 ⑧농 장 명 : 농가는 개인 농장명,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농장명을 적으세요.
- ▶ ⑨연 락 처 : 농장의 전화번호 또는 농장장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 ▶ ⑩소 재 지 : 농장의 도로명 주소를 적으세요.
- ▶ ⑪축 종 : 대출을 희망하는 축종에 “O” 표시를 하세요. 여러 축종에 동시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축산업등록이 된 축종만 가능합니다.
- ▶ ⑫사육두수 : 신청일 현재 정확한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여러 축종을 신청할 경우 각각의 축종별 사육 마리수를 기입하세요.
- ▶ ⑬사육면적 :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의 동수와 면적을 적으세요.
- ▶ ⑭기 지원현황 : 예전에 사료구매를 목적으로 지원받은 정책자금의 현황을 기입하세요. 잘 모르시면 농협에 대출잔액을 문의하시거나 “대출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적으세요.
 - 지원년도 : 최초 대출받은 년도를 적으세요.
 - 사 업 명 : 당시 지원받았던 정책자금 사업명을 적으세요.
 - 대출금액 : 당시 대출받았던 금액을 기입하세요.
 - 상환금액 : 지금까지 대출액 중 갚은 금액을 적으세요.
 - 상환 예정금액 : 신청일 현재 대출금 잔액을 적으세요.
- ▶ ⑮신청금액 : 대출을 희망하는 금액과 대출을 신청하실 농·축협을 적으세요. 단, 농가당 지원한도를 모두 희망하실 경우 기존의 대출잔액은 차감하고 적으세요.
- ▶ ⑯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에 “O” 표시를 하세요.
- ▶ ⑰기타 : 해당 구분에 “O” 표시를 하세요.
- ▶ ⑱입금선택 : 사료업체에 일시금으로 입금을 원하는지, 분할 입금을 원하는지 선택하세요.
- ▶ ⑲증빙서류 : 직업, 사육두수,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서 지자체에서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은행에 제출하세요.
- ▶ ㉔ ~ ㉚동의 및 확인사항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동의 및 확인사항은 “□”란에 “V” 표시를 하고 서명란에는 서명 또는 도장을 찍으세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 해당란에 자필로 서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은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 . . 성 명 : _____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금융실명법 제4조에 따라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사후 관리를 원활히 하고 지원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객님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축산법에 따른 사료구매자금 **지원정보 등의 확인**
-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지자체,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대출 취급기관에 한함)
- 사료 관련 정책 개선방안 마련, 실태조사 등을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

○ 금융정보 이용목적

- **사료구매자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한 타 정책자금 대출 여부 확인, 사료구매자금 대출 금액 및 상환 금액 확인, 채납여부 확인 등
- 지원자격 확인,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정보의 확인을 위해 **수집정보의 제3자 제공**(지자체,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과 대출 취급기관에 한함)
- 사료구매자금 **분석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고유식별정보

○ 금융정보 수집항목 : 타 정책자금 대출여부, 사료구매자금 대출 여부, 상환 및 채납 여부 등 금융정보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관리 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 · 추천 통보서

대 상 자	①성 명 (법인명)	②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③연락처	
	④주 소 (도로명 주소 기재)				⑤축산업 등록번호 <생략가능>
	⑥직 업 <생략가능>	⑦직 장 명	<생략가능>	⑧연락처	<생략가능>
선 정 내 용	⑨농 장 명	<생략가능>			⑩연락처 <생략가능>
	⑪소 재 지 (도로명 주소 기재)	<생략가능>			
	⑫축 종	{ }한우 { }육우 { }낙농 { }양돈 { }양계 { }오리 { }사슴 { }말 { }산양 { }토끼 { }메추리 { }꿩 { }타조 { }꿀벌 { }거위 { }칠면조 { }기러기 { }면양 { }염소			
	⑬사육두수 (신청일 기준)	<축종별 반드시 기재> [사육두수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을 기준으로 재 산출하세요]			⑭사육면적 동 m ² <반드시 기재>
	⑮기 지원현황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잔액 :			
	⑯선정·추천 금액 (백만원)	백만원(대출신청 농·축협 / 농협은행 :) [선정·추천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 대출잔액(상환예정금액) 차감 후 신청금액 이내에서 선정·추천하세요]			
	⑰사용용도 (거래구분)	신규 사료구매(), 기존 외상금액 상환()			
	⑱유효기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⑲입금선택	일시 입금 () / 분할 입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또는 사료구매자금 사업자로 선정·추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 한우조합장 [직인]					
※ ⑳본 선정·추천서는 ㉑의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상자(농가 등)는 승인없이 다른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또한, 실제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액이 변동되거나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서명 또는 인)					

<작성 요령>

- ▶ ① ~ ④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 ⑤ ~ ⑪는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기입을 생략할 수 있으며, 대신 신청서 사본을 첨부해서 발급해드립니다.
- ▶ ⑤ 축산업등록번호 : 축산업 등록증의 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세요.
- ▶ ⑥ 직 업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 ⑦ 직 장 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조하여 기입하세요.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직장명과 부양가족 여부 등을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해서 본인의 직장인지 가족의 직장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아울러 비정규직 등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⑧ ~ ⑪ : 신청서의 내용을 기입하세요.
- ▶ ⑫ 축 종 :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축종인지 확인해서 기입하세요. 축산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축종은 선정·추천이 곤란합니다.
- ▶ ⑬ 사육두수 : 보통은 축산업 등록증의 면적과 축종별 기준면적을 비교, 산출해서 신청두수와 계산두수 중 작은 숫자를 기입하세요.
 - * 축산업등록증 면적 / 축종별 기준면적 = 계산두수
 - 소는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조회해서 사육두수를 기입하세요.
 - 가금류는 최근 부화장 등에서 입식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서 기입하세요.
- ▶ ⑭ 사육면적 : 축산업 등록증의 두수와 면적을 확인 후 기입하세요.
- ▶ ⑮ 기 지원현황 : 농가가 정확한 대출잔액을 모를 경우 농협에 확인 하도록 안내해 주세요.
- ▶ ⑯ 선정·추천금액 :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기존의 대출잔액을 차감 한 금액과 농가 희망금액 중 작은 금액을 기입하세요.
- ▶ ⑰ 사용용도 : 대출금의 사용용도를 확인하고 사료구매계약서와 외상금액 영수증을 확인해서 선정·추천금액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 ⑱ 유효기간 : 추천서의 유효기간으로 농식품부의 지자체 배정일(공문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⑲ 입금선택 : 농가가 일시 입금을 선택하였는지 분할 입금을 선택하였는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 타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세요.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연락처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금현황			융자금현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관계	예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신 용 조 사 서**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연락처			
생산자단체등 ·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지원 제한, 대출금 회수 등 제재 현황

①시·도	②시·군·구	③성 명	④선정일	⑤제재사유	⑥지원제외 기한	⑦회수 대상 금액	⑧회수 금액

<작성 요령>

▶ ① ~ ② : 제재처분을 한 시·도 및 시·군·구를 기입하여 주세요.

▶ ③성명 : 제재 대상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주세요.

▶ ④선정일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날을 기입하여 주세요.(0000.00.00. 형식으로 기입)

▶ ⑤제재사유 : 추진일정 경과, 부정수급 중 선택하여 기입하여 주세요.

▶ ⑥지원제외 기한 : 지원제외 처분 기한을 기입하여 주세요.(0000.00.00. 형식으로 기입)

▶ ⑦회수 대상 금액 : 대출금 회수 처분을 한 경우 회수 대상 금액이 얼마인지 기입하여 주세요(단위 : 원)

▶ ⑧회수 금액 : 회수 대상 금액 중 얼마가 회수되었는 지 기입하여 주세요(단위 : 원)

▶ 기 타 : 제재현황은 매년 누적으로 작성하되, 지원제외 기한이 경과한 경우 및 회수 금액 전액이 회수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명단에서 삭제하여
 주세요.

사료구매 정책자금 주요 질의응답서(Q&A)

Q1. 사료구매 정책자금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 신규로 사료를 구매하는 자금과 기존의 외상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두 가지 용도로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 * 둘 이상의 사료공급업체 이용 가능
- 신규 사료구매 정책자금은 사료공급업체와의 구매계약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기존 외상대금상환은 외상거래한 구매내역서와 영수증(채무변제확인서) 등이 있어야 합니다.

Q2. 외상대금 상환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 사료공급업체에 외상으로 사료를 구입해서 발생한 채무의 원금과 사료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받은 대출금의 원금이 해당합니다.
- 대출금의 경우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사료 구매임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금은 해당 대출금의 원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에 대한 증빙 서류 및 범위 >

- ① 대출금액과 일치하는 '사료구매내역서'
 - ② 대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료공급업체로 계좌이체 한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
- * 위 두가지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지원 가능
 - *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현금 입출금 거래(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등)는 '금융기관 거래내역 확인서'로 인정불가
 - * 대출금의 사용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선정 제외

Q3. 사료구매 정책자금으로 외상값 상환이 가능한데 왜 농신보에서는 외상값 상환시에는 보증서 발급이 안되는 것이지요?

- 농신보 보증으로 실행된 사료구매 정책자금 관련 대출로 기존의 대출(외상값) 등을 상환하는 것은 신용·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에 대해 보증을 지원하는 농신보 설립 목적 및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제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사료공급업체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 사료공급(제조업 또는 도·소매 포함)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공급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 이런 업체와의 계약만 유효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농업생산자인 법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축산업허가·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 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이 가능합니다.
- 단, 축산업허가·등록이 불가능한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에 사료구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도 농가당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무원(특수경력직 포함), 교육공무원, 정부 또는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출연기관의 재직자는 제외됩니다.
- 단, 비정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계약직 또는 1일 4시간 이하 근로자는 가능합니다.

Q6. 가축계열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계열화사업 참여농가는 사료를 구매하지 않고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계열화농가일지라도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열화사업 계약서에 농가가 직접 사료를 구입해서 사육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단, 농신보에서는 이 경우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Q7. 지원축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지원축종은 가축 중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거위·칠면조·기러기), 사슴, 말, 산양(면양,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이 이에 해당합니다

Q8. 대출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 해당 시·군·구에 있는 지역농·축협(품목조합 포함)과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농협은행은 지역 농·축협에 비해 축산업 및 사료구매 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축산물 이력제시스템 조치가 곤란하므로 기존 대출자의 추가 대출 등 부득이한 경우에 대출할 수 있습니다.

Q9. 농가당 선정·추천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축종별로 정해진 농가당지원한도^①와 농가의 사육마리수와 축종별 마리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② 중에서 낮은금액에 기존의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잔액^③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금액의 범위 내에서 선정·추천합니다.

(예) ①사육두수×지원단가 = 5억, ②지원한도 6억, ③대출잔액 2억, 축산 농가 신청금액 5억원인 경우

☞ ① 5억, ② 6억, ③ 2억으로 최종 선정·추천금액은 3억입니다.

- ①과 ②중 낮은 금액인 5억에서 ③의 2억을 뺀 금액

Q10. 지원우선순위를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정책자금 지원 필요성이 높은 농가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입니다.
- 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순위의 우선순위자를 먼저 선정·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 지원자, 부분 지원자, 전액 지원자의 기준은 농가의 지원한도와 그동안 대출받았던 총액(대출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 * 지원한도가 1억원인 농가의 경우 ① 대출금액이 없는 경우는 미 지원자, ② 대출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는 부분 지원자, ③ 대출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액 지원자

* 이 경우에도 선정·추천금액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Q11. 축종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할 때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축종별로 제한조건이 없으므로,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지원 한도 (대출잔액 등) 등을 잘 살펴 선정·추천하여야 합니다.

Q12. 예산 부족으로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추천을 하게 되므로 신청액이 배정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희망하는 금액을 전액 대출 받을 수 없습니다.

Q13. 시·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해야 하나요?

-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신청농가의 요건을 확인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추천하시면 됩니다.

Q14. 지원대상 및 전제조건, 우선순위 등은 변경되는 것이 없나요?

- '19년도부터는 지원 제외자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만이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제외자에 추가되었습니다.
- 아울러, 인센티브로 당초 구제역·AI 피해농가만 지원한도를 1.5배 더 받을 수 있던 것을 사료효율 향상과 악취제거 등을 위한 사료 첨가용 미생물제제 연중 사용 농가도 추가하였습니다.
- '23년도부터는 우선순위가 개편되었으니, 변경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Q15. 지자체별로 자금을 배정하였는데 과부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정기적으로 대출현황을 확인하여 과부족이 발생한 지역 간에 반납 조치 및 추가 배정을 통해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16. 사업대상자 선정·추천 시·군·구와 대출 실행 시·군·구를 일치시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13년도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천 받은 시·군·구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14년부터는 선정·추천 받은 시·군·구에서만 대출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시·군·구에서는 농가 및 농·축협에 통보하는 문서에 타 지역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꼭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을 취급하는 일선 농·축협 등에서는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취급하지 마시기 바라며,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만 취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Q17.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 지역을 일치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정·추천 지역과 대출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미대출자 현황 및 대출가능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로 인해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추천이 곤란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농가들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Q18. 해당 시·군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당 시·군·구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은 경우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가는 해당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구에서는 그 사유를 확인해서 타 지역에서 대출을 받아도 된다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19. 해당 시·군·구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농·축협에 모든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서 지역내 농·축협에는 추가로 담보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 됩니다.
* 본인 명의의 주택, 차차 등이 주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등 제출
- 이때 단순히 타 지역에 소재한 농·축협이 주거래 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타 지역에서 대출은 곤란합니다.
- 이는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축협에 동시 가입 및 거래를 하고 있어서 지역내에서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20. 타 지역에서 선정·추천된 농가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한 농·축협은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해당 선정·추천 시·군·구에 대출실행 내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Q21. 사업신청 및 접수, 선정·추천, 대출 등은 언제부터 가능하나요?

- 수요조사 및 예산 배정을 통해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등)에 대역할 계획이므로 시·군·구에서 선정·추천하면 즉시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설정된 유효기간 내에만 대출이 가능하므로 각 시·군·구에서는 조기에 선정·추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2. 사업대상자가 농·축협에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 선급금 잔액에 대해 당초 계약한 사료공급업체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다만, 선급금 잔액 회수와 그동안 공급받은 실적 확인 및 시·군과 농·축협의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농가가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농가에서는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업체와 선급금 반환 협의를 하신 후 **참여 선급금을 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직접 입금**토록 한 후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①기존업체가 신규업체에 이체한 영수증, ②기존업체로부터 공급 받은 세금계산서, ③신규업체와 체결한 구입계약서 등

- 만약 **농가가 기존업체에서 선급금을 직접 반환**받거나, 관련 서류를 시·군과 농·축협에 제출하지 않으시면 **“용도의 사용(부당사용)”**으로 간주하여 **대출금 조기회수, 위약금리 부과, 일정 기간 지원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또한 사료공급업체는 **농가에 직접 선급금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사료구매 정책자금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며 관련 사업(사료산업종합지원 등)에서도 배제할 계획입니다.
- 가급적 사료공급업체를 중간에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와 대출금이 부담되는 농가에서는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대출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23. 대출을 할 때 농신보 보증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사료구매 정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2억원 → 3억원, '22.6.2~) 하였고, 개인신용평가 적용 제외 등 농신보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규정」 제25조에 따라 농신보에서 동일인에 대해 누계기준 3천만원까지는 전액보증(농신보 100%), 3천만원 초과시에는 부분보증(농신보 85%, 금융기관 15%) 하고 있습니다.

(사례) 금융기관 신용평가액이 15백만원인 농가가 축사시설자금 1억원, 사료구매자금 2천만원에 대해 농신보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축사시설자금에 대해 먼저 농신보 적용을 받으면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는 농신보 적용이 곤란하나, 사료구매자금을 먼저 받으면 전액보증 요건에 따라 사료구매자금과 축사시설자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인근의 지역농축협 및 농협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4. 신청서의 구비서류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신청자의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사료구매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토록 개선하였습니다.
- 농가가 제출한 증빙서류는 신청서 내용과의 사실관계 확인용으로만 이용하고, 제출서류는 농가에게 되돌려 주셔서 농·축협에 제출토록 안내하셔서 서류를 이중으로 발급받거나 복사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Q25. 농가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각각 시·군·구에서 선정·추천을 받을 수 있나요?

- 농가당 지원한도 관리가 곤란하여 불가합니다.
 - 가장 사육 마리수가 많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육 마리수까지 검토해서 선정·추천을 해 주셔야 합니다
- * 대출실행도 한 영업점에서만 가능

Q26. 꿀벌의 경우 설탕 구입용도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가급적이면 양질의 화분 등을 구입해서 급여하여야 합니다.
- 다만, 꿀벌의 무밀기에 부득이 급이하기 위한 용도로 설탕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꿀벌의 지원한도의 범위 내에서 군당 70천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예시참조)

(예시) 꿀벌 100군을 사육중인 농가가 설탕과 꿀벌전용사료(화분떡 등)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 100군에 대한 사육규모에 따른 한도는 15백만원이며, 설탕구매자금에 대한 한도는 7백만원이 적용됨

* 축종에 따른 지원한도는 90백만원이나, 사육규모에 따른 지원한도를 초과하므로 여기서는 적용되지 아니함

→ 설탕을 6백만원, 꿀벌전용사료를 9백만원 구매하는 것은 가능

→ 설탕 8백만원 꿀벌전용사료 7백만원 구매하는 것은 불가

Q27. 각 시·도별로 상황에 맞게 농가지원한도 및 마리당 지원 단가를 축소운영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 일부 지역의 경우 배정된 예산에 비해 대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현재 기준으로 선정·추천을 하면 일부 소수 농가에게만 지원이 편중될 우려가 있어서 각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지원한도 및 단가를 축소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Q28. 사업선정자의 대출은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나요?

- 사업선정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금 배정일로부터 3개월 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3개월을 경과한 경우 미대출분을 일괄 반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이점을 고려하여 신청 및 사업자 선정·추천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당해연도 예산은 연도말까지 대출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출이 실행이 어려운 경우, 개별 관할 시·도/시·군에 대출마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개별 신청 건에 한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가 대출마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29. OEM 사료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요?

- OEM 사료구매 정책자금에 대한 사업시행주체는 한우협동조합 연합회이고, 각 지역에서 사업신청 및 선정, 추천 등은 한우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별 한우조합입니다.
- 즉, 한우협동조합연합회는 시·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참여 한우조합은 시·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 참여 한우조합(8개소) : 서울경기한우조합, 경기한우조합, 대전세종충남한우조합, 충북한우조합, 충남한우조합, 전북한우조합, 전남광주한우조합, 경북대구한우조합
- OEM 사료에 대한 축종은 한우에 한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둘 이상의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등은 OEM 한우사료는 한우조합 연합회에 신청하시고, 다른 축종은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다만, 한우사료는 OEM사료와 일반사료의 중복 신청시 사업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Q30.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발생 농가는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발생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축산농가는 사업 신청시 농장의 구제역·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 담당자는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추천 통보서 발급 시 사전 KAHIS 정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추천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31.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농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32. 농신보의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대상에 법인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포함될 수 없을까요?

- 농신보법 설립 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이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며, 특히 개인 농림어업인을 우선보증대상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농어업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과 신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사료구매자금 특례보증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를 거쳐 최대 20억원까지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신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3. 대출금을 농가의 통장으로 입금받을 수 있을까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은 농식품 사업자금을 집행할 때 집행증빙자료를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농가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집행증빙자료 없이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규정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만, 축산농가에서 사료구매를 위한 운전자금으로 입금받아 사용할 목적이면, 농가경영안정자금(이차보전)인 농업종합자금(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소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소요경비에 대해 2년간 지원(2.5% 또는 변동금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협 등 대출취급기관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